

2025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및 청구 안내

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이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학생 및 제3자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

☐ 보험가입 주요현황

명칭/증권번호	보험사	가입기간	보험종목	담보사항	가입금액	특이사항
플러스 교육기관보험 /2025-1214793	KB 손해 보험	25. 3. 23. ~ 26. 3. 22.	학교시설 배상책임	대물 1사고당	2억원	자기부담금 100,000원
			상해사망 후유장해 (교육기관생활중)	1인당	1억원	
				[신입생대상] OT 행사 중 1인당, 1사고당	2억원	-

명칭/증권번호	보험사	가입기간	보험종목	담보사항	가입금액	특이사항
영업배상 책임보험 /2025-1214883	KB 손해 보험	25. 3. 23. ~ 26. 3. 22.	학교시설 배상책임	대인1인당	2억원	자기부담금 100,000원
				대인1사고당	20억원	
			구내·외 치료비	1인당, 1사고당	2백만원	자기부담금 50,000원
				[신입생대상] OT 행사 중 1인당, 1사고당	5백만원	-

☐ 주요담보내용

1. 학교시설배상책임

가. 보상하는 손해

- 본 대학교 교육시설 및 본 대학교가 소유/사용/관리하는 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혔을 경우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

나. 보상하지 않는 손해

- 본 대학교 교직원이 고유업무에 종사하다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배상책임
- 학교시설의 수리/개조/신축/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(단, 통상적인 유지/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)
- 본 대학교 소유/사용/관리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(단, 본 대학교 시설 내에서 대학 소유/임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배상은 보상)

- 본 대학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- 본 대학교 시설을 타인이 임대하여 사용 중 그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- 본 대학교 교직원이나 학생의 개인적인 배상책임
- 본 대학교 소속 운동선수 및 감독이 운동연습 및 경기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
다. 특이사항

- 학교시설배상책임은 법률상 배상책임 부분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로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

2. 재학생/신입생 상해사망후유장해

가. 보상하는 손해

- 교육기관 생활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했거나(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), 상해로 인해 장애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 지급
- 교육기관 생활 중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함
 - 1) 교육기관 수업 중(정규 교육활동 외의 교육기관이 행하는 모든 특별활동)
 - 2) 교육기관 수업 및 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
 - 3) 특별교육행사 참가 중(반드시 학교 교직원 인솔이 있어야 함)
 - 4)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하교 중

나. 보상하지 않는 손해

-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(단, 심신상실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)
-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-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- 직업, 직무,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다음 열거된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
 - 1) 전문등반, 글라이더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, 수상보트, 패러글라이딩
 - 2) 모터보트,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흥행 또는 시운전

3. 재학생(학부·대학원생) 구내외 치료비

가. 보상하는 손해

- 학교측에 법률상 배상책임은 없으나 도의적, 후생복지 차원에서 본 대학교 교육시설 및 본 대학교가 소유/사용/관리하는 시설이나 교육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본 대학교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

나. 보상하지 않는 손해

- 본 대학교 교직원이 고유업무에 종사하다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
- 본 대학교 소유/사용/관리 차량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
(단, 본 대학교 시설 내에서 대학 소유/임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배상은 보상)

- 본 대학교 소속 운동선수 및 감독이 운동연습 및 경기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- 본 대학 구내 밖에서 학생 본인이 일상생활 중에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

다. 보험금 청구 조건

- 재학생(학부·대학원)만 해당 됨
- 교외활동시 학교장 또는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교직원의 인솔/감독하에 이뤄진 활동만 보상 가능
-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보험금 청구 가능
- 치료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음
- 진단서 등의 서류 발급비는 보험료 지급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며,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

☐ 보험금 청구절차

1. 청구절차

- 재학생(학부·대학원)은 시설물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청구절차가 보건진료소에서 진행됩니다.
- 사고발생시 [통합정보시스템-보건진료소-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]에서 6하원칙으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.
* 교학실이 없는 학과의 경우 [사고경위서(단체)]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보건진료소에 접수됩니다.
- (대인/치료비) 모든 치료가 종료되면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시어 진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025. 3. 23. 00:00 이전 사고의 경우 다른 보험이 적용되므로 학교 홈페이지 보건진료소 공지사항 6번 『2024년 「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」 가입에 따른 이용안내』 게시글을 확인하십시오.

[보험청구 업무 흐름도]

① 사고발생	② 사고신고	③ 보험금 청구	④ 접수	⑤ 완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내 시설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관리팀 → 전화신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관리팀 [대물] 손해건적 및 청구서 제출 • [대인] 진료비영수증 및 청구서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험회사 서류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장조사 심사지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 (대인, 대물) • 재학생 교내외치료비 (시설물로 인한 부상 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 학과 → 통합정보시스템 보건진료소 "사고경위서" 작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구문의 : 보건진료소 청구인이 보건진료소로 직접 연락 • 보건진료소 방문 치료종료 후 영수증 등 관련서류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험회사 서류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출서류 심사지급

※ 참고 : 학생지원팀 - 4783호(2016.07.28.) 「아카데미종합보험」업무 소관부서 변경 협조요청(캠퍼스관리과)

2. 제출서류

① 보험청구서 [미성년자 : 보호자가 작성]
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[미성년자 : 보호자가 작성]
③ 병의원 및 약국영수증(카드매출전표불가)
④ 초진기록지 또는 진단서 [청구금액 10만원 이상시 / 소액청구시 미첨부]
⑤ (입원시)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상세내역서
⑥ (수술시) 수술확인서 및 진료비상세내역서
⑦ 재학증명서
⑧ (미성년자인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, 보호자 통장사본
⑨ [학과에서 작성] 학교 공문 또는 사고경위서

※ 사고유형에 따라 기타 추가서류를 보험사에서 요구할 수 있음.

기타사항

1. [용어풀이] 치료비

-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, 구급차, 입원(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), 치료, 수술,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,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를 포함

2.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

- 보험금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-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보험 청구액과 보험지급액이 상계될 수 있습니다.

3. 상해사고는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치료비만 담보합니다.

4.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중 치료비 항목은 배상성격의 보험으로 학생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.

5. 이 안내자료는 보험약관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으며, 안내문 외의 사항인 경우 보험적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보건진료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